■ 교육공무원 징계령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22. 9. 13.>

## 확인서

	•	· <del></del> •	
	소속	직위(직급)	성명
1. 인적사항	(현재)	(현재)	(한글)
	(혐의 당시)	(혐의 당시)	(한자)
2. 비위유형	가.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 비위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나.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다.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		(□레다하 □레다 어오)
	라. 학생 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비위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마. 성폭력ㆍ성희롱 등 성비위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바.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사. 학생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폭력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아. 신규채용, 특별채용, 전직, 승진, 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자.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기	거나 대응하지 않은 비위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차. 성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비위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카. 성비위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타. 「공직선거법」상 관련 비위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파.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 • 신탁과 관련한 위무 위반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하.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(소극행정 제외)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거. 소극행정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너. 부정청탁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더.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
	대상 여부(□해당함, □해당 없	음), 대상금액( 원,	배)
3. 징계부가금	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		-n <i>)</i>
	공적 사항	진계 시	  항[불문(경고) 포함]
4.감경 대상	_ , , ,	시행청 날짜	종류 발령청
공적 유무 및	705 7001	100 E-1	211 = 233
	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괴	 ト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	 위 해당 여부(□해당함.
위 해당 여부			
71 40 11	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
	* 징계 횟수, 주의 • 경고 횟수, 직	무수행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	를 기재
행실			
	퇴직 예정일		
6. 그 밖의 사항	정년:, 근무기간 [	<u> 만료:, 그</u> 밖	의 사항( ):
	* 그 밖의 사정 참작 사유 기재		
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			
작성책임자 (소속 및 직위) (직급) (성명) (서명 또는 인)			

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(신청)권자(직위)

직인